

TRADE BRIEF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EU는 2019년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 이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EU발 주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후변화 부문에서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되었다.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 지침'도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기업에게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신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 예정이다.

나아가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 평가한 결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 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EU환경규제의 법제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환경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공급망 내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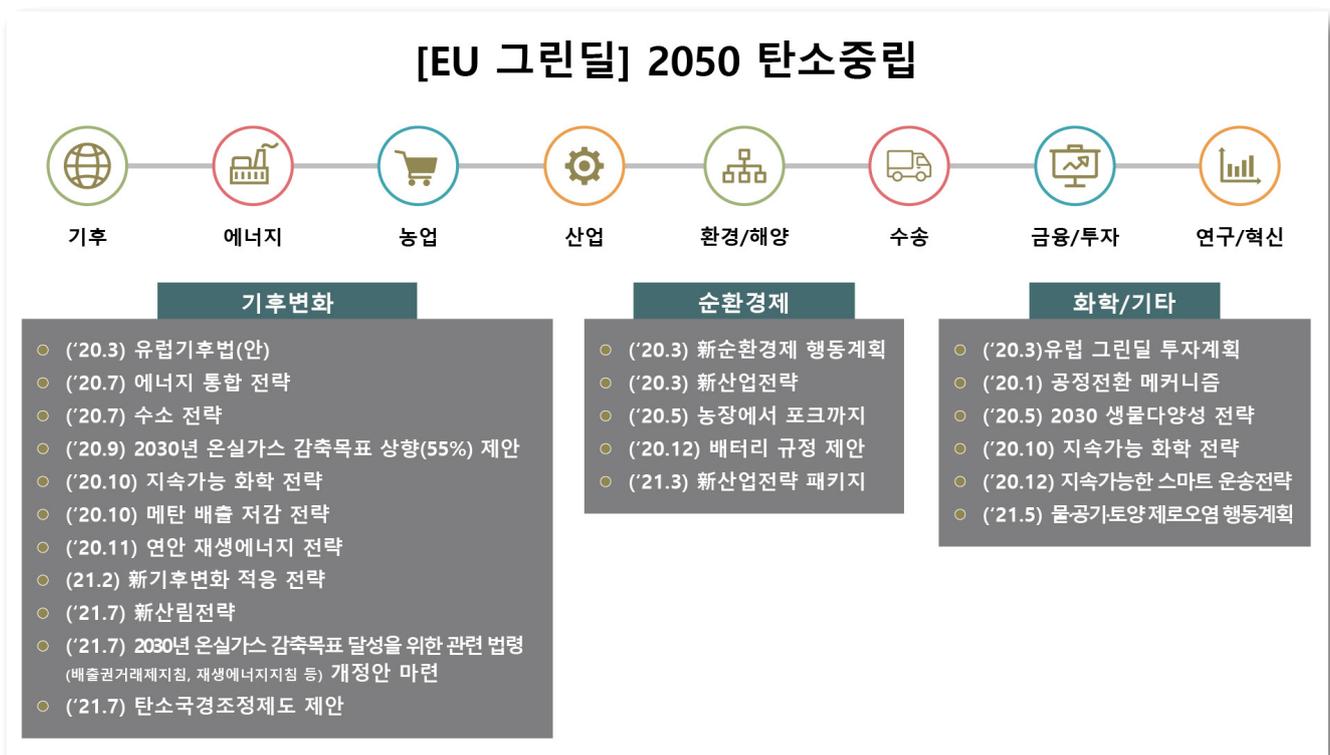
정책연구실 그린전환팀

황준석 연구원 02-6000-5617, Jeff@kita.or.kr

장현숙 수석연구위원 02-6000-5463, hs.jang@kita.or.kr

I EU 환경정책 강화

- ◎ EU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아젠다 주도
 - 환경 및 기후목표를 경제·산업, 에너지, 금융, 농업 등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EU경제를 저탄소녹색경제로 체계적 전환
 - 2019.12월, EU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 이후 세부 계획들이 발표
 - 기존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신규 규제가 최근 대거 도입



- ◎ 동시에 EU만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및 기후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EU대외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

II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코디자인 규정 新배터리 규정 플라스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 (CLP) 개정 EU REACH 규제물질 확대 RoHS 규제물질 추가

1. 기후변화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0월 시범시행

- 2022.12월 EU 의회·이사회·집행위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법안에 잠정합의하며 10월 시범시행이 확정
-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이 추가됐으며, 직접배출 외에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도 포함됨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항 목	내 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정(안) ¹⁾ (2021.7.)
발효일	잠정합의 이후 세부사항(처벌,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의회 및 이사회 의 최종승인 후 EU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20일 후 공식발효
시행일	2026.1월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2023.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 운영)
목적	EU 역내 제조 상품과 역외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탄소누출 방지
대상	EU*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입하는 자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적용 예외 ※ 특정조건에서의 간접배출(세부내용은 협상을 통해 확정 예정)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전구체, 철망간, 나사, 볼트, 너트 등) 포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기간(2023.10.~2025.12.):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여 전환기간 이후(2026.1.~): 제품생산과 관련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기준 초과 시 EU 내 이산화탄소 가격에 맞춰 배출증명서 취득 필요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EU 집행위는 CBAM 확장 여부 관련 포괄적 검토를 한 뒤 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 예정 -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품목 추가 여부, 전환기간 이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 및 간접배출 산출방법 등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S 지침(Directive 2003/87/EC) 내 벌금 방식 준수(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집행위 안) 전년도 평균 인증서 가격의 3배의 벌금 부과(환경위 안)

주: EU의회·이사회·집행위 3자 협의 잠정합의안(2022.12.) 기준
자료: EU 집행위

1) EU Commission(20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 공급망실사 지침²⁾ 하반기 도입 전망

◎ 2022.2월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 이후 도입 논의 지속

- 적용대상 기업에게는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및 인권침해 여부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개선 및 공개할 의무가 부여됨
- 2022.12월 EU 이사회(안)이 채택됐으며, 유럽 의회의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2023.5월 예상) 최종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개요>

항 목	내 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안) (2022.2.)			
시행일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 고위험산업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후부터 적용 * 5월 의회(안) 확정 이후 3자 협의에 따라 최종법안이 확정될 예정			
목적	· 역내국의 개별적 공급망실사법안을 통합해 EU 차원의 일관된 실사기준 적용 · EU 내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			
대상	구분	기업규모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	예상기업 수
	EU기업	대기업 (그룹1)	직원 수: 500명 초과 매출액: 전년도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9,400개
		중견기업 (그룹2)	직원 수: 251~500명 매출액: 전년도 전 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1.5억 유로 미만(고위험산업군 비중이 50% 이상)	3,400개
	제3국기업	대기업 (그룹1)	직원 수: 기준 없음 매출액: 전전년도 EU 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600개
		중견기업 (그룹2)	직원 수: 기준 없음 매출액: 전전년도 EU 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1.5억 유로 미만(고위험산업군 비중이 50% 이상)	1,400개
주1: 고위험산업군은 섬유(섬유, 가죽, 신발 등), 농림어업, 광물(광물자원 채굴, 금속 제품 제조 등) 주2: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리베이트, 매출관련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을 공제한 순매출액 기준				
주요내용	· 기업의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및 인권침해 활동 여부를 확인, 보고, 개선할 의무 부여 - ① 실사사무의 기업정책 내재화 ② 환경,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③ 잠재적 부정적 영향 예방 ④ 실질적 부정적 영향 최소화 ⑤ 불만접수 절차 확립 ⑥ 실사 규정 및 조치의 효율성 모니터링 ⑦ 실사사무 이행내용 공개			
처벌	회원국별 자율, 전반사항은 회원국이 지정하는 관계당국이 관할 * 유럽감독기구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 ENSA)를 설치해 EU회원국 간 통일된 지침 적용을 감독할 예정			

주: EU 지침은 회원국별 별도 입법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국마다 달라질 수 있음
자료: EU 집행위

2) EU Commission(2022), 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ligence.

◎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법으로 공급망실사법을 시행 중

<프랑스와 독일의 공급망실사법 도입현황>

국가	법안명	시행일	내용	적용대상
프랑스	기업경계법	2017.3.27.	환경 및 인권 보호 관련 실사계획 수립 및 침해 방지 조치 시행	· 프랑스 소재 기업 중 직간접 자회사 고용이 5,000명 이상인 기업 · 전 세계적으로 직간접 자회사 고용이 10,000명 이상인 기업
독일	공급망실사 의무화법	2023.1.1.	환경 및 인권 보호 관련 실사 프로세스 도입 통한 공급망 내 위험 식별 및 관리	· (2023) 독일 등록 기업 중 고용인원 3,000명 이상 · (2024~) 고용인원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 독일 진출 6개월 초과 기업에 적용

자료: Legifrance, 독일연방공화국관보

◎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미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까지 관리³⁾

- 애플, BMW 등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개념을 도입해 공급망 전반에 환경 등 ESG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 시 ESG 리스크 평가정보를 반영해 거래를 중지하는 정책 운영
- 이러한 추세는 관련 법안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

<해외 글로벌 기업 대응사례>

기업명	실사내용
BMW	매년 약 2,3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진단·실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해 150여 개 협력사(3개년 평균)와 계약 중단
GE	매년 약 1,200개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대상으로 공급망 ESG 진단·실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71개 협력사가 ESG리스크를 사유로 공급망에서 배제됨
Siemens	공급망 ESG진단·실사과정에서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거래관계를 종료하는 정책 운영 * 거짓정보 공시, 아동/강제노동, 환경규제 위반, 위험한 작업환경, 유해물질 유출, 과도한 초과 근무, 규정보다 낮은 임금 지급 등
Apple	협력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이슈를 반영하여 ‘공급망 행동규범’을 지속 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범 내 ESG 고위험 협력사와의 거래관계 단절을 명시

자료: 공급망대응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3) 장현숙 외(2010), 해외 바이어의 탄소정보 요구추세 및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3)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⁴⁾으로 환경 관련 공시 강화

- ◎ 2023.1월 기존의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NFRD)을 개정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발효
 - NFRD 대비 대상기업 범위가 크게 확대(집행위 추산 11,700개→약 50,000개)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비즈니스 모델, 전략, 위험, 방침, 인센티브 제도, 실사제도 및 수행과정 등이 포함되며 공시 범위도 확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개요>

항 목	내 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NFRD, 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개정 및 대체
발효일	2023.1.5.
시행시기	· 기존 NFRD 적용기업: 2025년(회계연도 2024년) · NFRD 비적용기업 - 대기업: 2026년(회계연도 2025년) - 중소기업: 2027년(회계연도 2026년)~2029년(회계연도 2028년) 중 선택 - 비EU기업: 2029년(회계연도 2028년)
목적	기존 NFRD가 다루지 못하는 지속가능성 부문을 강화한 공시기준 확립
대상	· EU 시장에 상장된 기업, 단 초소형 상장기업(직원 10인 이하, 순매출 70만 유로 이하,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중 2개 이상 충족기업) 제외 · 대기업: 직원 250인 초과,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중 최소 2개 기준 충족기업 · 비EU기업: EU 내 1.5억 유로 초과 순매출 발생 및 4천만 유로 순매출을 초과하는 EU지사 또는 CSRD가 적용되는 자회사(EU 상장기업/대기업)가 있는 경우
주요내용	· 공시대상 기업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⁵⁾ 에 근거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도 등을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연례경영보고서에 전용 섹션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형태로 해당 부분을 유럽통합전자공시시스템(ESAP)에 업로드해야 함 · 공시 내용에 대한 외부기관 감사가 필수적이며, EU 집행위는 2026.10.1일까지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할 예정
처벌	회원국별 자율

자료: EU 집행위, Accountancy Europe, Gibson Dunn LLP 등 저자 종합정리

4)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5) 유럽재무보고자문위(EFRAG)는 2023.6월까지 1차로 공통표준을 마련하고, 2024.6월까지 2차로 부문별 표준, 중소기업과 비EU기업에 대한 표준 등을 수립할 예정

2. 순환경제

(1)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시행 예정⁶⁾

● EU 집행위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을 2022.3월 발표했으며, 동 규정은 2023년 중 시행될 전망

* 2009년 발표된 에코디자인 지침⁷⁾을 개정

- 에너지 효율성을 주요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존 지침 대비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가능성, 수리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소가 추가, 집행위가 품목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예정⁸⁾
- 모든 품목이 적용대상이며, 디지털제품여권을 발급해 공급망 및 생애주기를 추적관리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함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요>

항 목	내 용
법률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 ⁹⁾ (2022.3.)
시행일	개정 규정은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의회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2023년 중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규정은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
목적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 생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설정
대상품목	모든 물리적 상품(Physical Products) - 식품, 사료, 의약품 등은 제외
주요내용	· 제품의 생애주기에서 내구성, 재사용가능성, 수리가능성, 환경발자국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함 ·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발급해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를 추적관리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폐기를 방지 ·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제품의 수와 폐기 사유를 공개해야 함(중소기업 제외)
처벌	회원국 자율

자료: EU 집행위

6) 신규법(2022), "EU, 새로운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정 발표", 한국무역협회.

7) EU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Union(2009),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8) 현재 세탁기, TV/전자디스플레이, 무선/스마트폰 등 품목에 대한 세부 이행규정이 존재하며, EU 집행위는 '에코디자인 실무계획(Working Plan 2022-2024)'을 발표하며 총 31개 품목(저온방열기, 상업용 세탁기/식기세척기 등)을 향후 검토 대상으로 선정

9) EU Commission(2022),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etting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2) 新배터리 규정¹⁰⁾ 발효 예정

◎ EU는 2022.12월 기존 배터리 지침¹¹⁾을 대체하는 배터리 규정의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2023년 1~2분기 중으로 발효 예상

- 전기차·전기자전거·산업용 배터리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탄소발자국·내구성·재활용 이력 등이 포함된 라벨과 QR코드(일명 배터리 여권) 부착 의무화

* 라벨링 관련 요건은 규정 발효 후 36개월, 휴대용배터리 제거·분리 의무화 및 QR코드 도입 요건은 42개월의 전환기간 부여

- 원료 광물 공급망 실사의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강화

*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비중(발효 96개월→156개월): 코발트(16%→26%), 납(85%→동일), 리튬(6%→12%), 니켈(6%→15%)

<新배터리 규정 개요>

항 목	내 용
법률	배터리 규정
발효일	2023년 1~2분기 중
시행일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목적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추구 및 순환경제 구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배터리 · SLI 배터리 ·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LMT) 배터리 · 용량이 2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배터리 여권'으로 불리는 라벨과 QR코드 부착이 의무화되며, 탄소발자국, 내구성,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함(규정 발효 42개월 뒤 시행) · 직전연도 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광물 공급망 내 사회 및 환경 위험(기후변화 등)에 대한 실사 의무가 부과됨(규정 발효 24개월 뒤 시행) · 새 배터리 생산 시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규정 발효 96개월 후부터 코발트의 16%, 납의 85%, 리튬의 6%, 니켈의 6%는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규정 발효 156개월 후부터는 그 비중이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증가
처벌	회원국 자율

주: EU의회·이사회·집행위 3자 협의 최종합의안(2022.12.) 기준
 자료: EU 이사회

10) EU Commission(2020),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1020.

11) Directive 2006/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September 2006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3) 플라스틱세(Plastic Tax) 시행

◎ EU는 유럽 그린딜의 탈탄소사회 추진 재원 마련 일환으로 플라스틱 지침¹²⁾을 통해 플라스틱세 도입(2021.1.1. 시행)

- EU 각 회원국은 연간 포장재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kg당 0.8유로의 부과금을 EU에 납부해야 함

*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22년부터 국가 예산으로 부담금 납부

- 스페인은 올해부터 kg당 0.45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2024년으로 시행일을 연기했고, 폴란드와 네덜란드 등이 도입 검토 중

<EU 회원국 내 도입 예정 플라스틱세 개요>

항 목	이탈리아	스페인
법률	EU 플라스틱 지침	
	예산법(The Budget Law 2022)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¹³⁾
발효일	2021.12.30.	2022.4.8.
시행일	2023.1.1. → 2024 잠정연기	2023.1.1.
목적	EU 플라스틱 부과금 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소	
납부대상	· (국내제품) 제조자 및 판매자 · (수입제품) 구매자 및 유통업자	생산자 및 수입자
주요내용	·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 kg당 0.45유로의 플라스틱세 부과 -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말까지 세금 납부 * 외국기업은 이탈리아 세무대리인 임명 필요 · 면제조건 - 플라스틱 비율이 40% 미만 - 수출용 및 재활용제품 - 의료기기로 사용되거나 퇴비화 가능한 제품 · 친환경적 생분해성 제품 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 제공(최대 2만 유로)	·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 kg당 0.45유로의 플라스틱세 부과 - 국내 생산자 및 구매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신고서를 통해 자체 정산 * 면제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명세서 발행 필요 ** 외국기업은 스페인 세무대리인 임명 필요 · 면제조건 - 수출용 및 재활용제품(기계적/화학적 제외) - 총중량이 월 5kg 이하인 소량사업자 - 파기된 제품 - 의약품, 유해폐기물의 보호, 유통 및 표시를 위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	· 미납 시 미납세금의 2~5배 벌금 부과(250~2,500유로) · 연체 시 미납세금의 25%의 벌금 부과(최소 150유로)	· 미납 시 미납세금의 0.5~1.5배 가산금 부과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EY, KPMG 등 저자 종합정리

12)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13) Waste and Contaminated Soil for a Circular Economy

3. 화학물질

(1)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개정¹⁴⁾ 시행 예정

- ◎ EU 집행위는 새로운 위험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소비자 정보전달성을 강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위임법률 및 부속서 최종 개정안을 발표(2022.12.)
 - CLP 개정안은 유럽 그린딜(Green Deal)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중요 부분
 - 내분비교란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5가지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

1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s, EDCs)
2	생물농축성·독성물질(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3	고잔류성·고농축성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4	잔류성·이동성·독성물질(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5	고잔류성·고이동성 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 소비자 정보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 용량에 따른 라벨링 요건(최소 글꼴크기, 줄간격, 자간, 배경 등)을 설정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 전달 규정 구체화
- 판매채널과 관계없이 시장 출시 전 화학물질 라벨링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 동 규정은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검토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2) EU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¹⁵⁾ 규제물질 확대

- ◎ 2023.1월 EU REACH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9개 물질이 추가되며 총 233종으로 대상 확대
 - * REACH SVHC 후보물질: 14종('08년) → 224종('22년) → 233종('23년)
- 현재 43종의 허가물질, 60종의 제한물질이 함께 등재

※ 참고 : EU REACH 규제물질

규제물질 분류	내 용	등재물질 수
고위험성우려물질 (SVHC)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독성물질이 우려되는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로 완제품 중량 기준 0.1% 초과 함유 시 정보제공 또는 신고 의무가 있음. 매년 2회(상/하반기) 업데이트	233종
허가물질	고위험성우려물질 중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되는 물질로,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REACH Annex 14)	43종
제한물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수용불가능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물질(REACH Annex 17)	60종

자료: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2023.2.기준)

14) EU Commission(2022), Proposal for a revision of the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s (CLP).

15)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질 및 완제품 내 화학물질 포함)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

<EU REACH SVHC 후보물질 추가등재 내역>

연번	물질명	EC Number	CAS Number
1	1,1'-[ethane-1,2-diylbisoxy]bis[2,4,6-tribromobenzene]	253-692-3	37853-59-1
2	2,2',6,6'-tetrabromo-4,4'-isopropylidenediphenol	201-236-9	79-94-7
3	4,4'-sulphonyldiphenol	201-250-5	80-09-1
4	Barium diboron tetraoxide	237-222-4	13701-59-2
5	bis(2-ethylhexyl) tetrabromophthalate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isomers and/or combinations thereof	-	-
6	Isobutyl 4-hydroxybenzoate	224-208-8	4247-02-3
7	Melamine	203-615-4	108-78-1
8	Perfluoroheptanoic acid and its salts	-	-
9	reaction mass of 2,2,3,3,5,5,6,6-octafluoro-4-(1,1,1,2,3,3,3-heptafluoropropan-2-yl) morpholine and 2,2,3,3,5,5,6,6-octafluoro-4-(heptafluoropropyl) morpholine	473-390-7	-

자료: ECHA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

(3) EU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¹⁶⁾ 규제물질 추가 예정

- EU는 현재 RoHS를 통해 납, 수은 등 10종이 포함된 신규 전기·전자제품의 EU 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와 중쇄염소화파라핀 2종이 1분기 중 추가될 전망¹⁷⁾

<EU RoHS 규제물질>

구분	물질명	EC Number	CAS Number	허용농도
현재 규제물질	납(Lead)	231-100-4	7439-92-1	0.1wt%
	수은(Mercury)	231-106-7	7439-97-6	0.1wt%
	카드뮴(Cadmium)	231-152-8	7440-43-9	0.01wt%
	6가크롬(Chromium)	231-157-5	18540-29-9	0.1wt%
	플리브롬화 비페닐 내염제(PBB)	-	-	0.1wt%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	-	-	0.1wt%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04-211-0	117-81-7	0.1wt%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201-622-7	85-68-7	0.1wt%
	디 부틸 프탈레이트(DBP)	201-557-4	84-74-2	0.1wt%
	디 이소 부틸 프탈레이트(DIBP)	201-553-2	84-69-5	0.1wt%
추가 규제물질 (예정)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 (Tetrabromobisphenol A/TBBP-A)	201-236-9	79-94-7	0.1wt%
	중쇄염소화파라핀 (Medium Chain Chlorinated paraffins /MCCPs)	287-477-0	85535-85-9	0.1wt%

자료: ECHA "ROHS Directive - Restricted Substances as per Article 4(1), Annex II"

16)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지침)

17) EU Commissio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list of restricted substances (update)",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469-Hazardous-substances-in-electrical-and-electronic-equipment-list-of-restricted-substances-update_en

III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및 수출기업 대응전략

◎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정성평가한 결과 ‘공급망실사 지침’과 ‘에코디자인 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

<EU 환경규제별 영향 비교>

주요 규제	개요		국내 기업 영향			
	발효시기	적용대상	종합	파급력	시급성	대응 난이도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2023 상반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공급망실사 지침	2023 하반기	4천만 유로 초과 매출기업 (고위험산업군 비중 50% 이상)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SRD)	2023.1.	1.5억 유로 초과 매출기업 / 4천만 유로 초과 매출지사 또는 동 지침 적용 자회사가 있는 기업				
에코디자인 규정 (ESPR)	2023 중	모든 물리적 상품				
新배터리 규정	2023 상반기	이동식배터리, 전기차·전기자전거 배터리, 2kWh이상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플라스틱세	2023.1.	플라스틱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2023 상반기	화학				
EU REACH & RoHS	2023.1.	전기전자제품 및 화학				

주: 파급력, 시급성, 대응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성평가
 자료: 연구자 분석



◎ EU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관련 법제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

-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선별해 모니터링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
- 법안 도입단계, 규정과 지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규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도 있음
- 입법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지침의 경우 확정되더라도 회원국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 국별 동향 또한 검토 필수

* 지침: 공급망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플라스틱 지침, RoHS
 *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 규정, 新배터리 규정, CLP, REACH

- ◎ 환경규제의 이행이 강제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환경요소를 반영해야 함
- (환경경영체계) 기업 경영목표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 시 환경경영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시행·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제품 혁신)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보다는 선제적으로 제품의 저탄소·친환경 혁신을 달성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전사적 실천) CEO부터 사원까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공급사슬, 조직관리 전반에서 친환경이 실천되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 공급망 내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필요시 대체공급망 발굴 등 공급망 재편을 검토할 필요
- 공급망실사 지침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대상 기업 혹은 1차 벤더 업체들의 필요에 의해 유럽 바이어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ESG 역량을 내재화하고 특히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제품별 생애주기 정보를 수집·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해야 함
- 이때 자사의 환경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소재 및 부품의 탄소배출량이나 유해물질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협력사의 환경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시 공급망 재편을 검토

<기업 대응전략>

내부차원	외부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실사 대응역량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 추진체계 구축 - 친환경 제품 혁신으로 신시장 진출 - 전사적으로 조직관리 전반에서 친환경 실천 · 국내외 법제화 동향 지속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내 환경리스크 점검 · 필요시 대체공급망 발굴 등 공급망 재편 검토